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동대문 제4선거구 신복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또한, 법률 개정으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. 정밀진단 결과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, 발달장애 예방·

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, 양육 방법 안내 및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 기능을 명확히 추가하여,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들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